

한국체육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규정

제정 2008.11.14. 제500호

개정 2010. 3. 5. 제518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교수법 개선을 위한 연구·개발, 교육 및 자문
2. 학습능력 신장 및 학습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·개발, 교육 및 자문
3. 교육매체 제작·활용에 관한 연구·개발, 교육 및 자문
4. 위와 관련된 워크숍, 강연회 등의 운영
5. 가상강좌 제작 및 운영 시설의 관리
6. 기타 교육정보 제공
7. 자체 홈페이지 운영

제3조(소장) 센터에는 소장을 두며,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4조(조직) ①센터에 교수지원부, 학습지원부, 교육매체지원부, 행정지원팀을 둔다.

②각 부에는 부장을 둘 수 있으며, 각 부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교수지원부는 교수법 개선을 위한 연구·개발, 교육 및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
④학습지원부는 학습 및 강의평가에 관한 기획·연구·개발, 평가실시, 교육 및 자문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
⑤교육매체지원부는 교육매체 제작·활용에 관한 연구·개발, 교육 및 자문, 가상강좌 제작 및 운영시설의 관리, 자체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
⑥행정지원팀은 각 부의 행정지원을 담당한다.

제5조(연구원 등) ①센터에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②연구원은 선임연구원, 연구원으로 구분하고,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의 소지자,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의 소지자로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③보조연구원은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소장이 임명한다.

제6조(직무) ①소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고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.

②부장은 각 연구부의 사업 및 연구개발을 관장한다.

③연구원은 센터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다.

④보조연구원은 연구위원 및 연구원의 연구업무를 보조한다.

제7조(연구위원회) ①센터의 사업을 연구하고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겸한다.

③연구위원은 각 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, 본 대학교 교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 중에서 약간인을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④연구위원은 센터의 연구과제에 대한 우선적인 제안과 참여를 할 수 있다.

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 또는 연구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.

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센터의 사업계획
2. 센터의 연구과제
3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 (2008.11.14. 제500호)

①(시행일)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0. 3. 5. 제518호)

①(시행일)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